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09호
- 나. 제 출 자 : 도병두 의원, 이인식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지역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사회와 구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라.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4.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8조, 제34조, 제35조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구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동 제정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될 내용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 내용에 대하여
 - 안 제7조에서는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음.

- 자치경찰제는 1990년대 행정개혁과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과 치안서비스의 지역 맞춤형 전환 요구,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함.
- 2003년 제주도에서 시범 도입되었고, 2018년 정부가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서 2020년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 현재는 국가경찰 인력을 활용하되,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함.
- 참고로 전남 완도군을 시작으로 84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서울시 자치구는 제정 검토 중에 있음.
-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자치경찰사무 개요 1부. 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30.>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8882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개정 2023.7.24>

③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7.24>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7.24>

[제목개정 2023.7.24]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
-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
-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24]

제4조의3(서울특별시의회의 위원 추천) 서울특별시의회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4]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의안의 제안 및 상정)

-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3.10.4>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③ 제2항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위원 중 일부는 대면, 일부는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포함)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3.10.4>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0.4>

⑤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제9조(관계자의 위원회 참석·답변 등)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

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7.24>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회의)

-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
 - 2.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사항
 - 4.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②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처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간사)

-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

제15조(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둔다.
-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 ③ 제2항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예산)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법 제3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20조(위원회의 감사)

-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

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칙(이하 "위원회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882호, 2023.10.4>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 지방분권 확대 필요성 : 1990년대 이후 행정 개혁과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논의가 활발해짐.
- 치안서비스의 지역 맞춤형 전환 요구 : 주민 생활에 밀접한 치안 사무 (학교폭력 예방, 교통관리 등)를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해야 할 필요성 대두
- 민주적 통제 필요성 : 경찰권에 대한 지방의회·주민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성 확보.

2. 주요 추진 경과

- 2003년 : 제주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 한정적으로 자치경찰제 시행, 하지만 국가경찰과 기능 분리 미흡, 실질적 권한 부족 등의 한계 있음
- 2018년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추진 선언
 - ▶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전국 확대 추진 명시
 -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도
- 2020년 12월 : 관련 법률 개정
 - ▶ 「경찰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이원화하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 2021년 7월 1일 : 전국 시행
 - ▶ 모든 시·도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 ▶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3. 현재 자치경찰사무 제도의 구조 및 운영 방식

- 지휘체계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 시·도 자치경찰 사무 수행
- 인 력 : 국가경찰 인력을 활용하되, 자치경찰사무 수행 인력은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
- 사무범위 :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 주민 밀착형 사무
- 재 정 : 국가경찰 예산과 구분되며, 자치경찰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고 일부는 시·도 예산에서 부담